사 처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815호 2023. 1. 5.(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1767호 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사천시 공고 제2023-5호 사천시 신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12
- 사천시 공고 제2023-14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2
- 사천시 공고 제2023-19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30
- 사천시 공고 제2023-20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31
- 사천시 공고 제2023-21호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33

| 회 | | | | | |
|---|--|--|--|--|--|
| 람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76 / FAX 831-6012

제815호

사천시 고시 제2023-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 -1 -7 -1 | ما ما | 해 제 내 용 | | | ~11 _11 \1 \ | 비고 |
|-----------------|--------------------------------|---------|-----|--------|-----------------------|---------------|
| 지구명 | 위 치 | 유 형 | 등 급 | 면적(m²) | 해제사유 | (지정일자) |
| 하탑 물통골 지구 | 사천시 축동면 탑리 919-3번지 일원 | 침수위험 | 가 | 8,300 |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 2005. 10. 07. |

붙 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부(따로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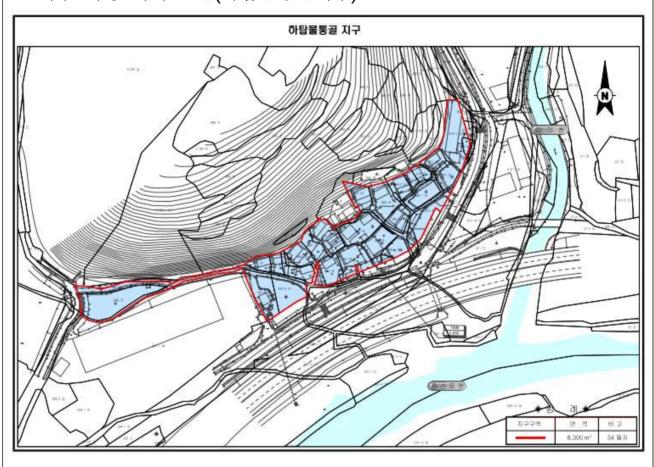
2023년 1월 5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궁 보

제815호

■ 지구 지정 해제 도면(하탑물통골지구)



제815호

사천시 공고 제2022-1767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 8기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건설과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등에 따라 정책자문단을 개편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자문단 개편 운영에 따른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4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81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3,

FAX: 831-6011)

제815호

| 입 | 법 | 예고 | 사항에 | 대하 | 의견서 |
|---|---|----|-----|----|-----|
| | | | | | |

| □ 자치법규명: 시 | l 천시 | 정책자문단 | 구성 | 및 | 운영조례 |
|------------|-----------------|-------|----|---|------|
|------------|-----------------|-------|----|---|------|

-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생 년 월 일: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15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2023 - 제 호 번 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 8기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건설과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등에 따라 정책자문단을 개편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자문단 개편 운영에 따른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815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 5. ~ 2023. 1. 25.(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제81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의"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 2. 우주항공분과위원회
- 4. 문화관광분과위원회
- 5.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6. 농·수산분과위원회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 제1조(목적) |
| 정책에 대한 <u>시장</u> 의 자문에 답하기 | <u>사천시장</u> |
| 위한 사천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 |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
| 으로 한다. | |
| 제2조(기능) 사천시 정책자문단(이 | 제2조(기능) |
| 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 |
|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u>시장</u> 의 정 | <u>사천시장(이하 "시장"</u> |
| 책자문에 답한다. | <u>이라 한다)</u>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u>시의</u>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 2. <u>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u> |
| 사항 |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자문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
| 단의 분야별 자문활동을 효율적으 | |
| 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 |
|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 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
| 2.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 | 2. 우주항공분과위원회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4. 건설도시분과위원회 | 4. 문화관광분과위원회 |
| 5.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5.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 6. 기술분과위원회 | 6. 농·수산분과위원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 <삭 제> |

위원은 제6호의 기술분과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자문단에 참석한 위 <삭 제> 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 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및 그 밖 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15호

사천시 공고 제2023-5호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라.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 바.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15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164,

FAX: 831-6036)

사 천 시 궁 보

제815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 | | | |
|--|----|----|--|--|--|--|
|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 | | |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 | | | | |

제815호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 안 2023 - 제 호 번 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 사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15호

- 마.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기 간: 2023. 1. . ~ 2023. 1. . (20일 이상)
 - 나) 제출의견: 없음, 건
 -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제81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15호

-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시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사천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제815호

-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 6. 산업재해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
- 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 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① 시장은 시 관할지역 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 ③ 안전보건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 관할지역 내의 사업장 지도
 - 2. 산업재해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신고
 -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815호

-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시 관할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 ③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런 법 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15호

사천시 공고 제2023-14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 내 재건축 및 공공사업 시행 시에 인근부지에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 거리 100미터 이내 →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제81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55)831-3365, 팩스번호: 055)831-6029)]

^1 천 시 공 보

제815호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
| □ 자치법규명: 사천시 | l 주차장 조례 | |
| ○ 성명(단체명): | | |
| ○ 주 소: | | |
| ○ 생 년 월 일: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15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2023 - 제 호 번 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교통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도심지 건축물 허가시에 인근부지에 주차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확대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 확대(안 제16조제1호)
 - ·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u>직선거리</u> 100미터 이내 →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5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 5 . ~ 2023. 1. 25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제81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본문 중 "100미터"를 "300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 제19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시설 | |
| 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 · |
| 호와 같다. | |
| 1.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 | 1 |
| 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 | <u>300 ¤]</u> |
| 거리 <u>100미터</u> 이내. <u>다만, 「건</u> | <u>터</u> <단서 삭제> |
| 축법」에 따른 공장의 경우에는 | |
| 300미터 이내로 한다. | |

관 련 법 규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 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 ·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 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제815호

사천시 공고 제2023-19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제9조 및 「사천시 주민투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5일

사 천 시 장

| 주 민 투 | 표 청구권자 총 | 청구에 필요한 | н ¬ | |
|--------|----------|---------|--------|---------------------------|
| 합 계 | 내국인 | 외국인 | 연서 주민수 | 비고 |
| 95,349 | 95,257 | 92 | 10,595 | 청구권자 총수의 1 <i>9</i> 이상 |

제815호

사천시 공고 제2023-20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사천시장 및 사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5일

사 천 시 장

■ 시장

| | 구 분 | | 주민소환투표 | 주민소환투표 청구 | 읍·면·동별 | 주민소환투표 |
|--------|-----|---|----------------|------------|---------|--------------|
| | | | 청구권자 총수 | 인介(15/100) | 최소서명인 수 | 청구조건 |
| | 계 | | 92,811 | | | |
| 사 | 천 | 읍 | 14,984 | | 929 | 주민소환투표 - |
| 정 | 동 | 면 | 11,112 | | 929 | |
| 사 | 남 | 면 | 11,774 | | 929 | 청구권자 총수의 |
| 용 | 현 | 면 | 6,147 | | 923 | 15/100이상의 |
| 용 축 | 동 | 면 | 1,434 | | 216 | 서명을 받되, |
| 곤 | 야 | 면 | 3,062 | | 460 | |
| 곤 | 명 | 면 | 2,628 | 12 000 | 395 | [기 O H 도 |
| 서 | 王 | 면 | 3,246 | 13,922 | 487 | 5개 읍 · 면 · 동 |
| 동 | 서 | 동 | 5,281 | | 793 | 이상에서 읍· |
| 선 | 구 | 동 | 4,433 | | 665 | 면 · 동별 각각 |
| 동 | 서 금 | 동 | 5,354 | | 804 | 최소서명인 수 |
| 벌 | 용 | 동 | 12,938 | | 929 | 이상의 서명을 |
| 향 | 촌 | 동 | 5 <i>,</i> 977 | | 897 | 받아야 함 |
| 남 | 샹 | 동 | 4,441 | | 667 | 린 아마 암 |

사 천 시 궁 보

제815호

■ 시의회 의원

| 자치단체 | | o H 드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20/100) | 읍·면·동별 최소서명인 수 | 주민투표 청구요건 |
|------|----------|-------|----------------------|-----------------------------|----------------------|--|
| 시·군 | 선거구 계 | 읍·면·동 | 92,811 | | | |
| | 가선거구 | 계 | 26,096 | 5,220 | | |
| 사천시 | 716/11 | 사천읍 | 14,984 | O,ZEO | 261 | |
| | | 정동면 | 11,112 | | 261 | |
| | 나선거구 | 계 | 17,921 | 3,585 | | ^① 각 읍·면·동별 청 구권자 총수의 100 |
| | | 사남면 | 11,774 | | 180 | 분의 20 |
| | | 용현면 | 6,147 | | 180 | |
| | 다선거구 | 계 | 10,370 | 2,074 | | ^② 다만, 읍·면·동 수 |
| | | 축 동 면 | 1,434 | | 104 | 가 3개 이상인 경우 |
| | | 곤 양 면 | 3,062 | | 104 | 위에서 구한 수가 청구권자 총수의 1 |
| | | 곤 명 면 | 2,628 | | 104 | 만분의 5미만인 경 |
| | | 서 포 면 | 3,246 | | 104 | 우 1만분의 5로하 |
| | 라선거구 | 계 | 19,509 | 3,911 | | 고, 1만분의 100초 과인 경우 1만분 |
| | | 동 서 동 | 5,281 | | 196 | 의 100으로 기재 |
| | | 선구동 | 4,433 | | 196 | |
| | | 동서금동 | 5,354 | | 196 | ^③ 읍·면·동 수가 2개 인 경우 청구권자 |
| | | 남 양 동 | 4,441 | | 196 | 총수의 100분의 1로 |
| | 마선거구 | 계 | 18,915 | 3,783 | | 기재 |
| | | 벌용동 | 12,938 | | 190 | |
| | | 향촌동 | 5,977 | | 190 | |
| | | | | | | |

제815호

사천시 공고 제2023-21호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및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5일

사 천 시 장

|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 | | 청구에 필요한 | 0.74 | ul ¬ |
|------------------|--------|-----|---------|-----------------------------|------|
| 합 계 | 내국인 | 외국인 | 연서 주민수 | 요 건 | 비고 |
| 95,333 | 95,257 | 76 | 1,362 | 청구권자(18세 이상) 총수의 1/70 이상 | |